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2년 3월 생산은 전월대비 1.5% 증가(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3.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줄었으나,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7%).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도소매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7%).

#### ◆ 2022년 3월 소비는 전월대비 0.5%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2.9%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1%)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2.6%)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5%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3%).
- 설비투자는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2.9%)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3.0%)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9% 감소함(전년동월대비 -6.0%).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3%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7.2%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3월	2월p	3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0.7	-0.3( 4.2)	1.5( 3.1)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0.5	0.3( 6.3)	1.3( 3.7)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0.6	0.3( 6.1)	1.3( 3.7)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0.2	-7.8(-4.6)	-0.3(-7.3)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1.0	-0.4( 3.8)	1.5( 3.7)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1.2	0.0( 1.6)	-0.5( 2.3)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0.5	-5.6( 2.3)	-2.9(-6.0)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1	0.7( 4.1)	0.7( 4.8)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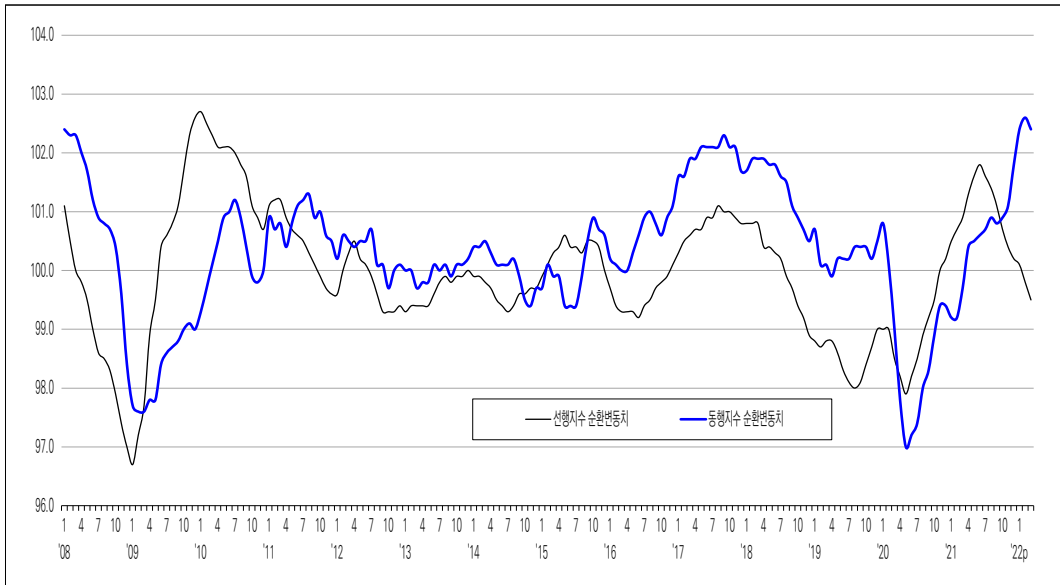
### ◆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8% 상승)

-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월대비 0.7% 상승함(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1.7%), 주택·수도·전기·연료(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2.2%), 식료품·비주류음료(0.7%), 음식·숙박(0.5%), 오락·문화(0.5%), 보건(0.2%), 교육(0.2%), 통신(0.3%), 주류·담배(0.6%)는 상승, 의류·신발은 변동 없으며, 기타 상품·서비스(-0.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6%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전월대비 0.8% 상승함.

◆ 2022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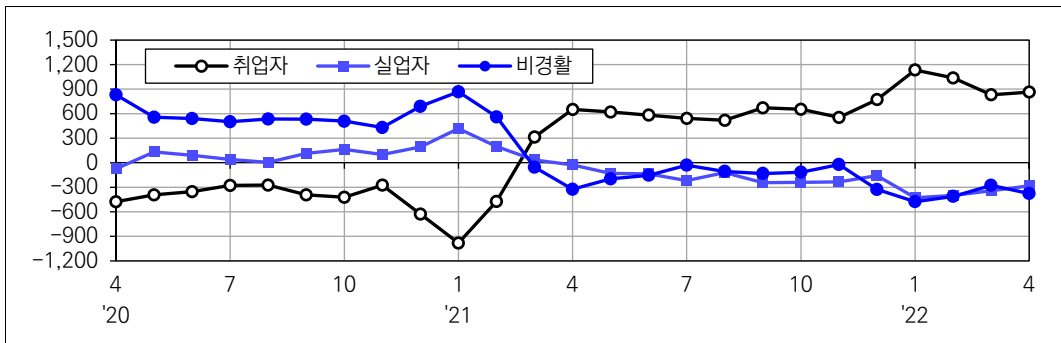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 2022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6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전월대비<sup>1)</sup> 11만 9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4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됨. 서비스업은 사업시설, 공공행정,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4월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50대는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사업시설 및 공공행정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60세 이상 취업자는 제조업 및 사업시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4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에서는 축소됨. 상용직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은 사업지원 및 공공행정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 혹은 감소로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 (일시휴직자) 4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3월 +23만 5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6만 7천 명 감소함.
- (실업자) 4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8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3월 -34만 2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만 2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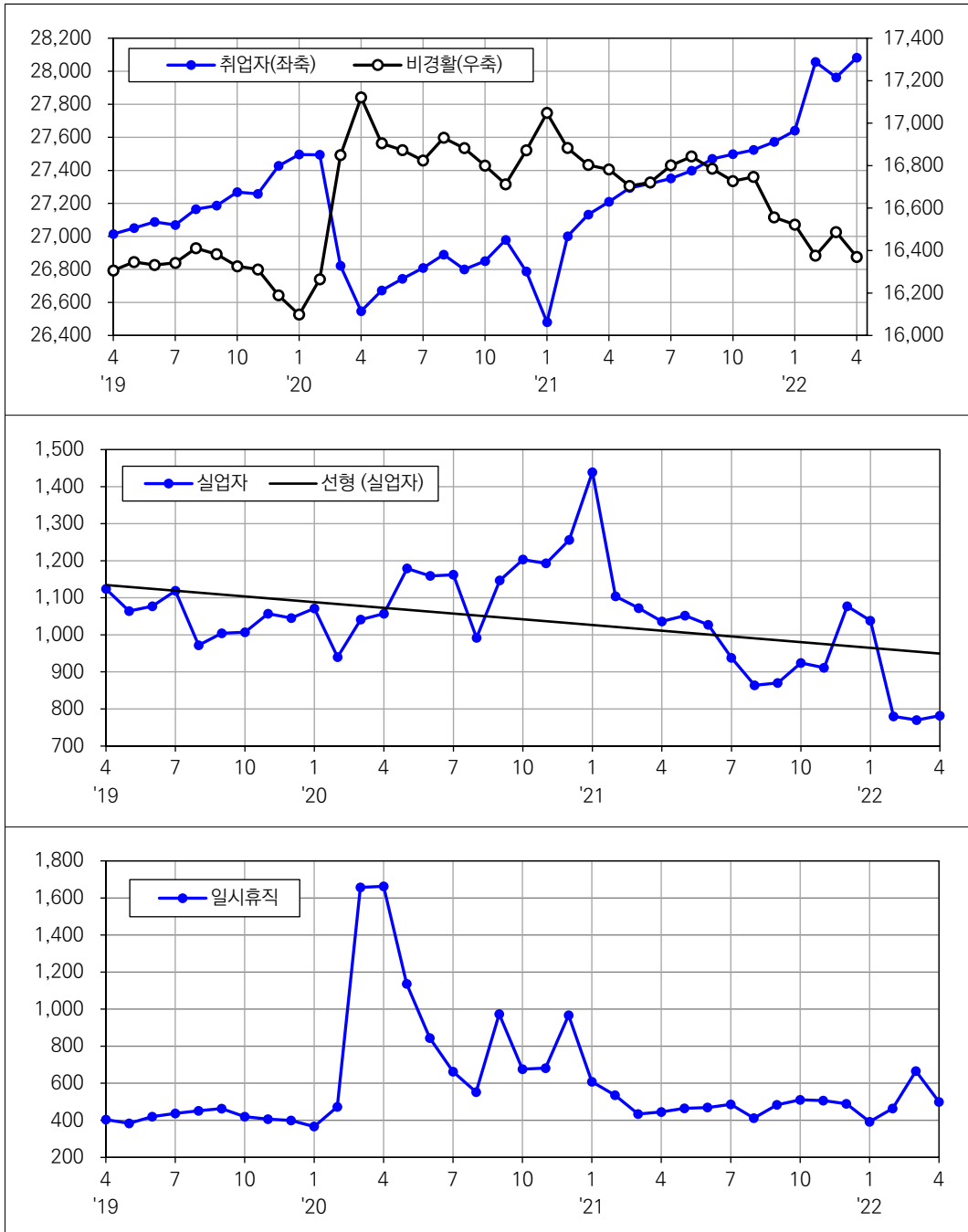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4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 50대는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업종별로 도소매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50대는 사업시설 및 공공행정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제조업 및 사업시설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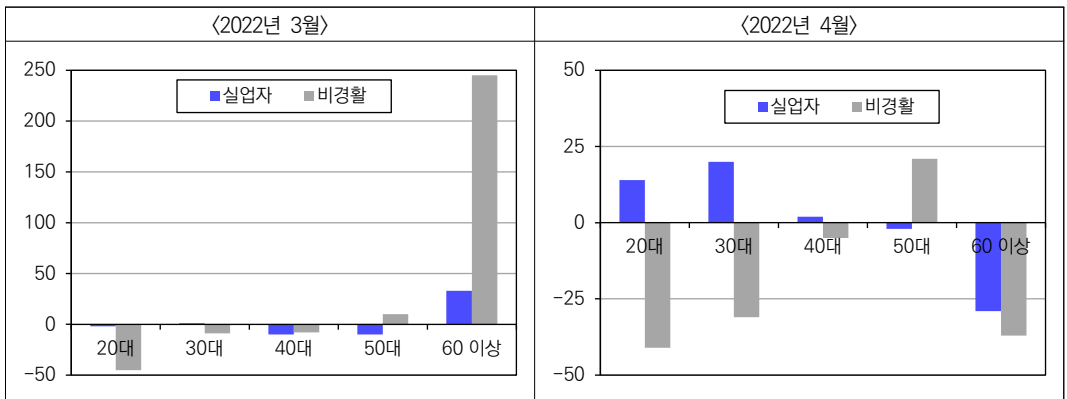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45	3	-5	(2)	219	174	191	(14)	15	43	33	(1)
실업자	1	-3	-3	(-1)	-122	-115	-100	(14)	-76	-79	-33	(20)
비경황	-142	-90	-73	(-6)	-182	-162	-207	(-41)	-74	-98	-132	(-31)
실업률	-2.2	-1.4	-1.3	(-0.4)	-3.3	-3.0	-2.6	(0.3)	-1.4	-1.5	-0.6	(0.4)
고용률	2.2	0.4	0.0	(0.1)	4.1	3.6	4.0	(0.3)	1.7	2.1	1.9	(0.1)
	40대				50대				60세 이상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37	21	15	(-2)	272	258	208	(-15)	451	331	424	(111)
실업자	-30	-40	-35	(2)	-110	-84	-61	(-2)	-61	-22	-51	(-29)
비경황	-80	-54	-52	(-5)	-135	-143	-108	(21)	201	270	196	(-37)
실업률	-0.5	-0.6	-0.5	(0.0)	-1.8	-1.4	-1.0	(0.0)	-1.5	-0.5	-1.1	(-0.5)
고용률	1.2	0.9	0.8	(0.0)	2.9	2.7	2.1	(-0.2)	1.6	0.6	1.4	(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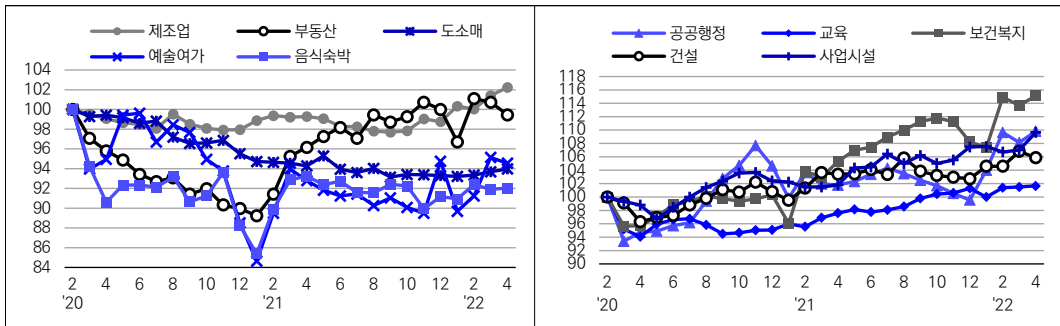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부동산, 예술여가, 건설이 감소함. 도소매, 음식숙박 및 교육은 정체된 반면 제조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사업시설은 개선됨.
- 부동산,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49	35	68	-1	-95	-3	-99	-6.2
광업	-1	1	0	0	-1	0	-1	-7.7
제조업	32	100	132	-13	61	36	84	1.9
전기·가스·증기	5	2	12	-1	-4	3	-2	-2.6
수도·원료재생	18	8	-11	3	-5	-14	-16	-9.2
건설업	65	64	48	0	45	-19	26	1.2
도매 및 소매업	-47	-32	-11	5	12	10	27	0.8
운수 및 창고업	135	81	87	24	-32	18	10	0.6
숙박 및 음식점업	55	-20	-27	33	-11	3	25	1.2
정보통신업	128	81	89	31	-14	23	40	4.3
금융 및 보험업	-4	-25	-54	11	-16	-22	-27	-3.4
부동산업	53	30	19	24	-2	-7	15	2.8
전문·과학·기술	105	72	50	-4	-13	-10	-27	-2.1
사업시설관리지원	69	74	104	-11	4	35	28	1.9
공공행정·사회보장	62	68	91	63	-17	19	65	5.6
교육서비스업	106	86	75	26	2	3	31	1.7
보건 및 사회복지	254	251	230	179	-30	35	184	7.2
예술·스포츠·여가	8	6	9	8	20	-3	25	5.4
협회·단체·수리·기타	-32	-30	-25	3	-3	-2	-2	-0.2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9	-17	-18	-4	-1	-2	-7	-8.8
국제 및 외국기관	-2	-1	-2	0	1	-3	-2	-1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는 2022년 4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은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 도소매, 정보통신,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사업지원 및 공공행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 혹은 감소로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사업지원에서 증가로 전환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767	811	929	114	134	103	351	2.3
임시직	342	166	48	301	-86	-73	142	3.1
일용직	-149	-172	-117	0	30	24	54	4.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	35	39	-8	-12	26	7	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5	25	20	10	-84	0	-75	-1.7
무급가족종사자	-38	-33	-53	-3	-17	-18	-38	-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농림어업	-3	0	1	7	4	0	6	-9	-1	10	9	9	35	31	64
제조업	51	92	136	10	11	6	-22	-4	8	4	12	11	-16	-9	-20
건설업	88	110	96	16	30	25	-60	-82	-76	13	10	11	9	2	-3
도소매	42	70	115	-11	-37	-49	-28	-15	-15	8	0	7	-27	-19	-35
운수창고	46	34	46	7	13	0	5	-11	-9	1	2	1	75	44	47
음식숙박	-1	-17	4	93	26	15	-48	-35	-40	-9	-20	-24	7	15	9
정보통신	124	79	90	10	10	1	3	1	0	2	1	1	-11	-9	-4
금융보험	-20	-22	-35	26	4	-4	-3	-2	-2	-3	0	-2	-4	-4	-10
부동산	38	21	21	10	7	-3	1	-2	-4	0	2	5	1	-1	-2
전문과학기술	112	96	93	-1	-20	-38	-5	0	0	-5	-5	-1	7	3	-2
사업관리지원	34	53	40	25	13	25	2	-1	30	-3	0	1	7	6	5
공공행정	41	72	88	19	-1	5	2	-3	-2	0	0	0	0	0	0
교육서비스	60	52	63	28	27	9	0	4	3	4	3	-2	10	-4	-1
보건복지	141	166	145	105	82	75	2	-4	-1	10	9	10	-2	-2	2
예술스포츠	-5	-13	8	2	2	-14	-3	4	-1	0	4	5	25	12	15
협회단체	6	18	23	9	6	5	-1	-13	-4	5	6	5	-42	-38	-42
가구 내 고용	1	-1	0	-18	-18	-19	-1	0	0	0	0	0	-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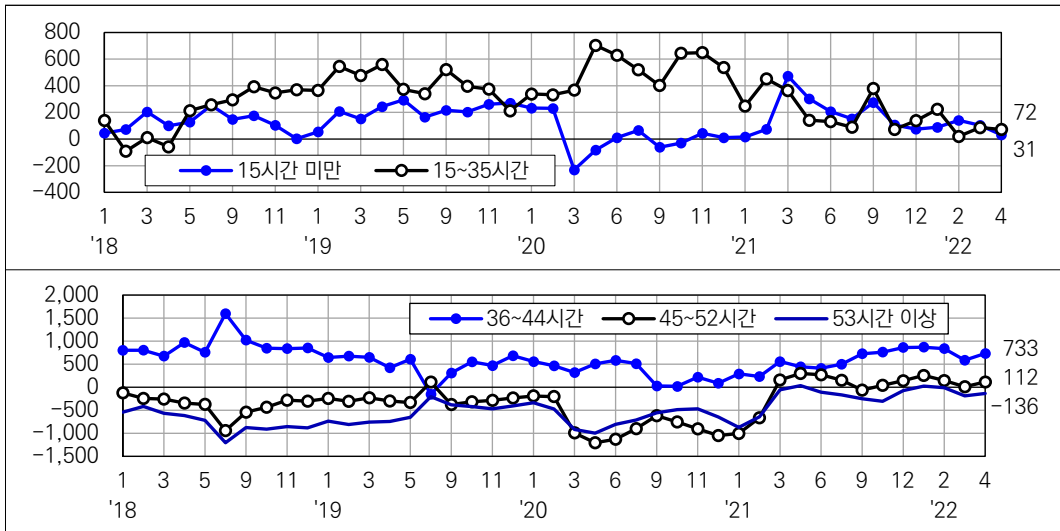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4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함.
-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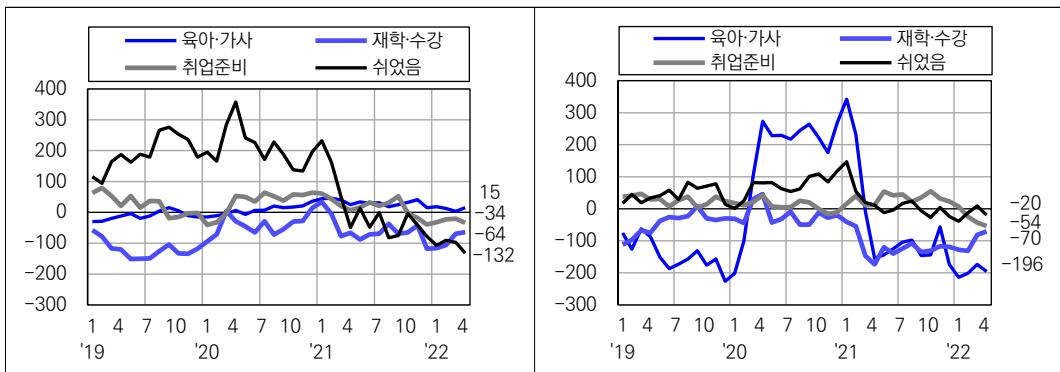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3월 -27만 7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4만 명으로 주로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여성은 -23만 6천 명으로 쉬었음이 감소로 전환되며 모든 사유에서 감소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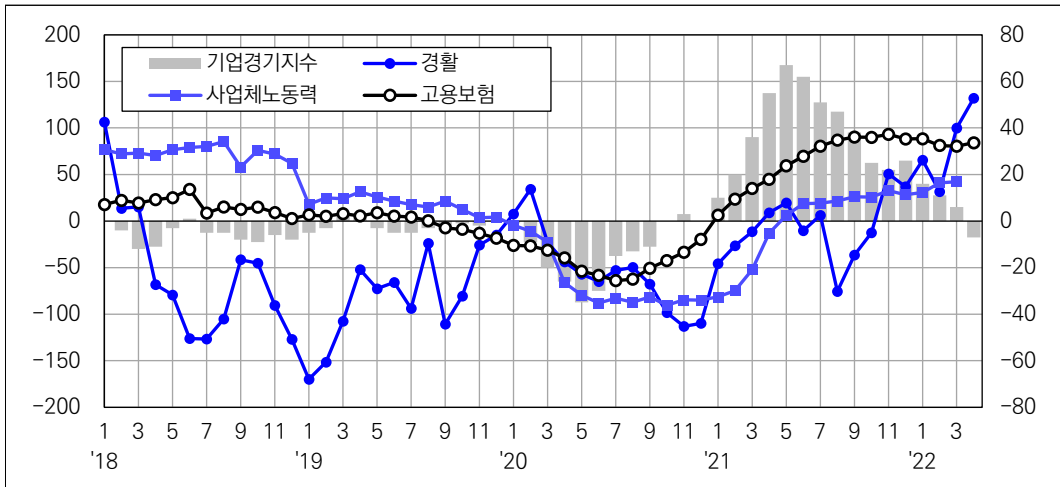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 2022년 4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3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피보험자는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함.
  -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4월은 전월대비 3만 6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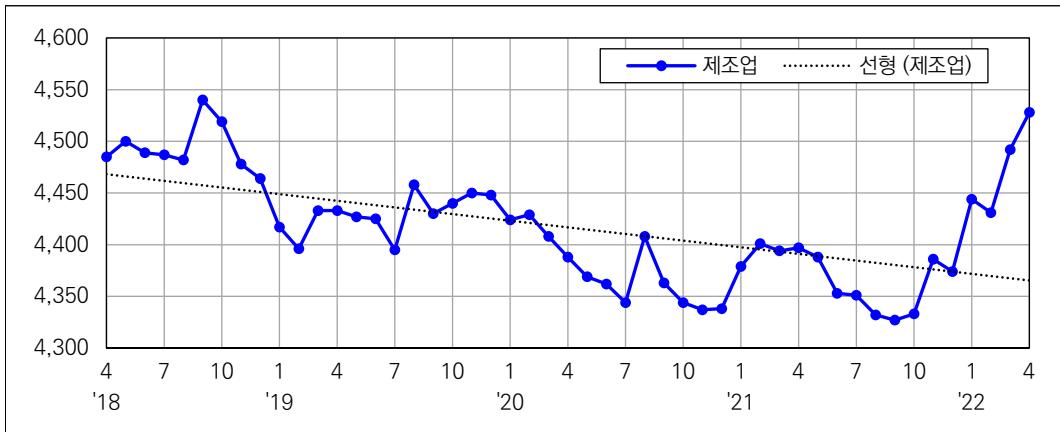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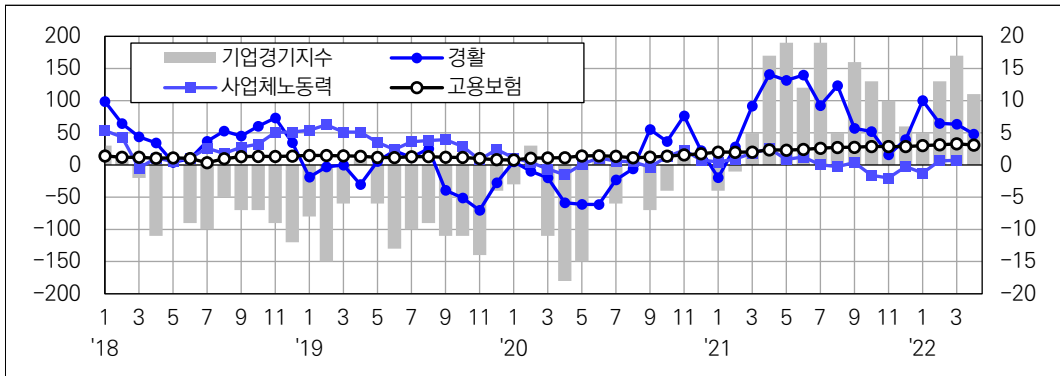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4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4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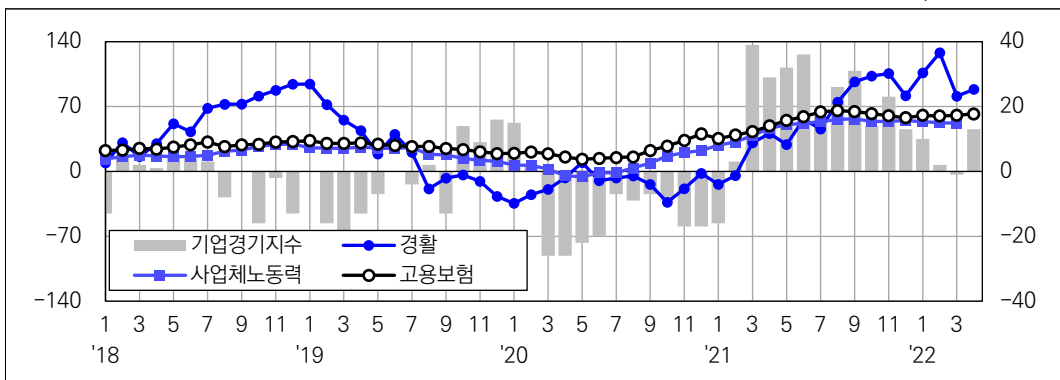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4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60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

- (정보통신) 경할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그 외 고용지표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함.
- (전문과학기술) 경할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그 외 지표는 증가하고 있음.
- (사업시설) 경할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도 최근 증가로 전환되며 모든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냄.
- (공공행정) 경할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10]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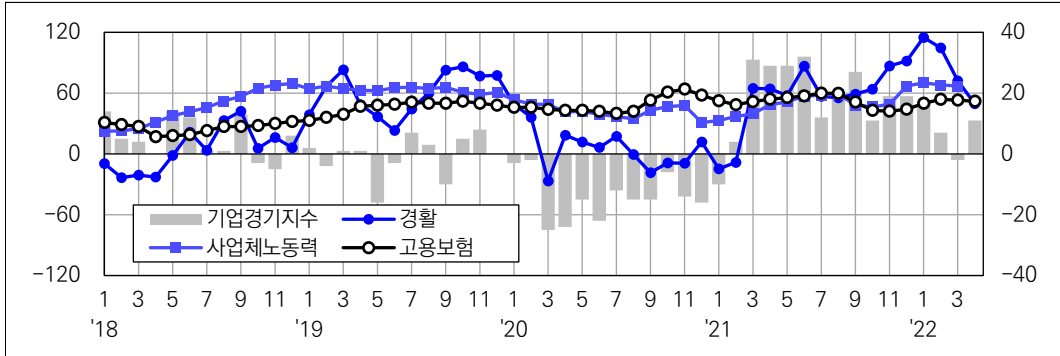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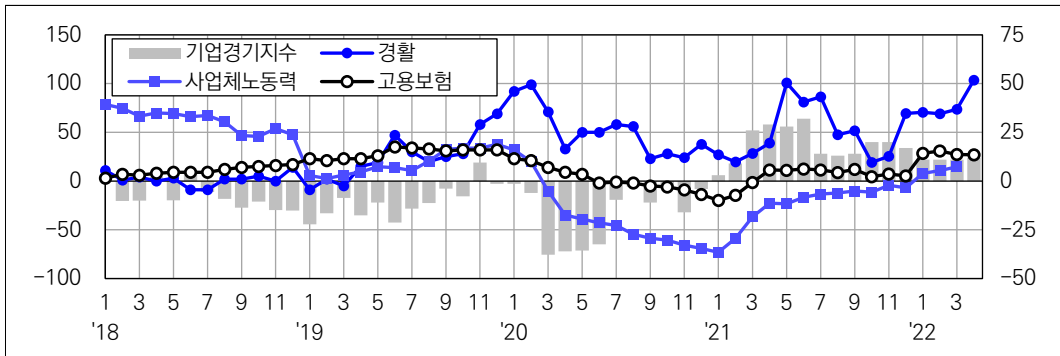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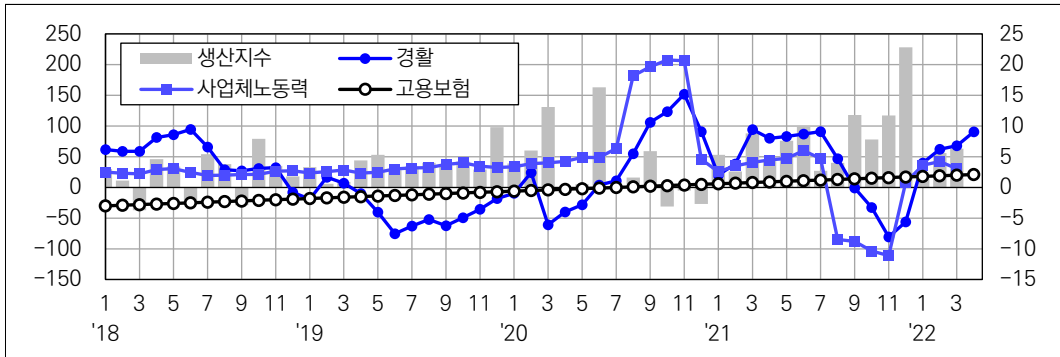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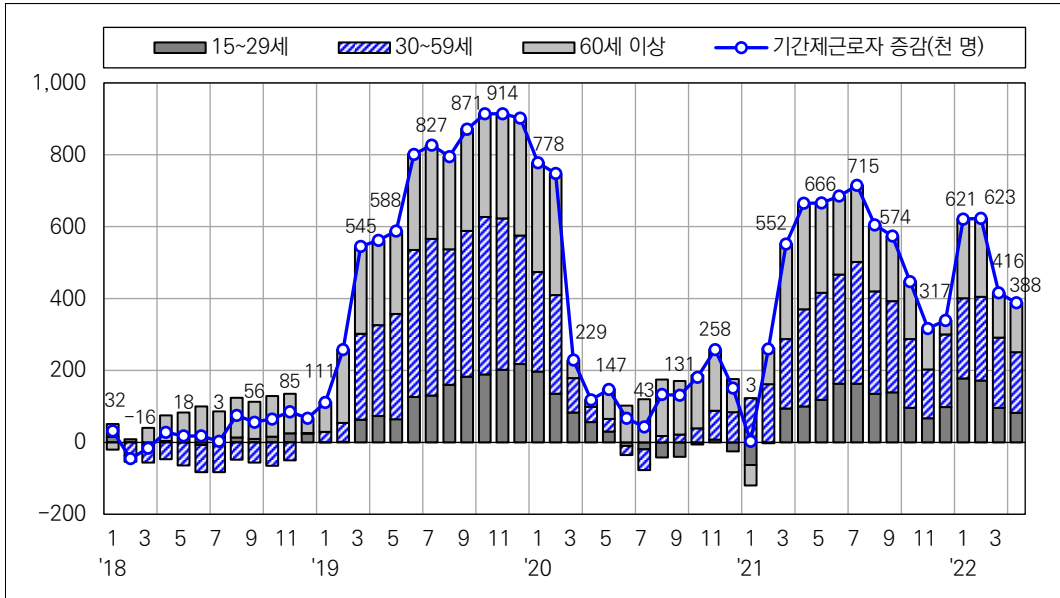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4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8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60세 미만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2년 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 2022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9만 5천 원(-6.5%)임.
  - 2022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0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비사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61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각각 4.0%, 7.1%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47.3% 감소함. 상용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 크며, 이는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2021년 2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비상용근로자의 감소와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차이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2월	2월	1~2월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 5.3)	3,490 ( 3.4)	3,527 ( 1.1)	3,689 ( 4.6)	3,914 (4.4)	3,950 (16.1)	4,208 (7.5)	3,695 (-6.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 5.1)	3,702 ( 3.1)	3,719 ( 0.4)	3,893 ( 4.7)	4,132 (4.2)	4,176 (16.4)	3,904 (-6.5)
	정액급여	2,891 ( 4.6)	3,010 ( 4.1)	3,077 ( 2.2)	3,181 ( 3.4)	3,163 (2.5)	3,110 (2.6)	3,292 (4.1)
	초과급여	197 ( 3.7)	202 ( 2.7)	200 (-0.9)	208 ( 3.7)	197 (-0.2)	197 (-1.1)	206 (4.5)
	특별급여	504 ( 8.5)	490 (-2.8)	441 (-9.9)	504 (14.3)	771 (13.2)	869 (143.8)	962 (24.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 5.5)	1,517 ( 6.2)	1,636 ( 7.8)	1,700 ( 3.9)	1,643 (6.6)	1,570 (7.5)	1,701 (3.5)	1,619 (3.1)
소비자물가지수	104.5 ( 1.5)	105.1 ( 0.4)	105.7 ( 0.5)	104.0 ( 2.5)	101.6 (1.2)	101.6 (1.4)	105.3 (3.6)	105.3 (3.7)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3.2	14.4	3.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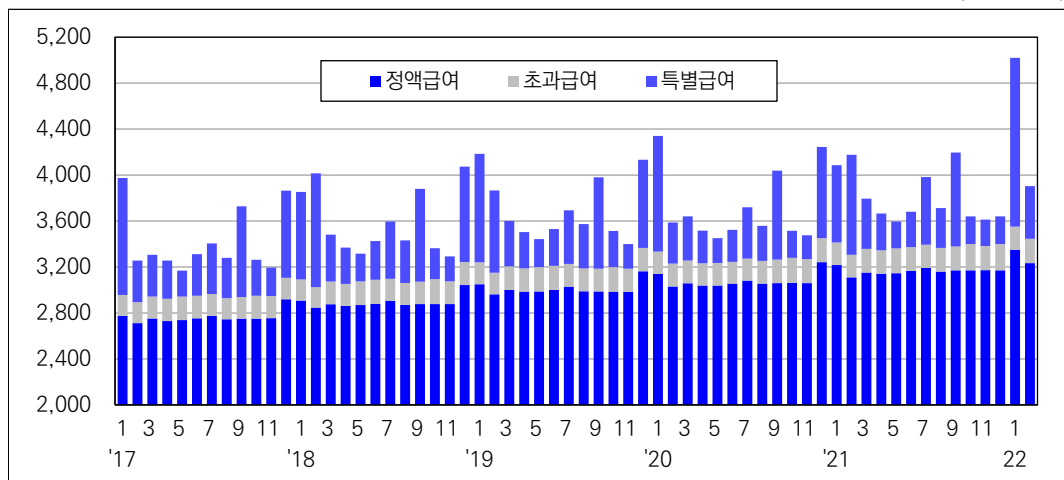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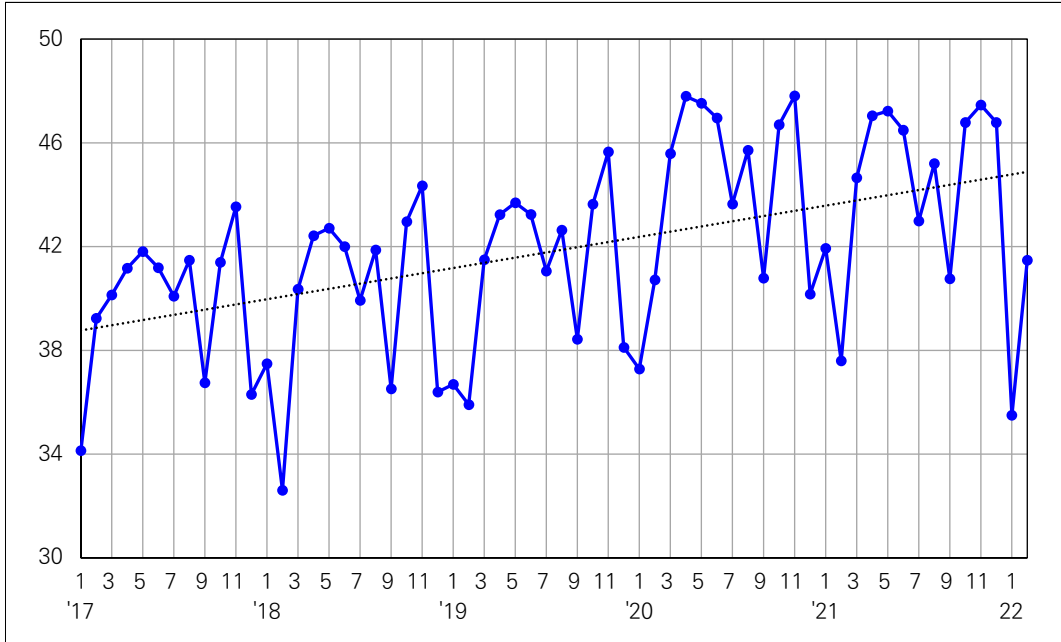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2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11.0% 감소함.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10.9% 감소함.
  - － 전반적으로 명절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등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제조업 일부 산업에서 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으로 임금상승률이 확대되었던 전년도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2022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54.1%, 39.6% 감소함.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0%, 0.3%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상승폭이 축소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396( 3.2)	3,472( 12.7)	3,562( 4.9)	3,303( -4.9)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594( 3.0)	3,685( 13.1)	3,783( 5.3)	3,503( -4.9)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92( 2.7)	2,955( 2.7)	3,110( 3.9)	3,066( 3.8)
	초과급여	171( -2.4)	176( 2.9)	166(-1.4)	166( -2.6)	173( 4.5)	178( 7.4)
	특별급여	292( -9.4)	322(10.4)	436( 7.2)	564(165.8)	500(14.7)	259(-54.1)
	비상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06( 6.1)	1,520( 6.1)	1,649( 2.7)	1,565( 3.0)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6,533( 6.5)	6,375( 25.5)	7,463(14.2)	5,675(-11.0)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6,649( 6.3)	6,483( 25.5)	7,627(14.7)	5,779(-10.9)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65( 1.4)	3,836( 1.7)	4,145( 4.6)	4,020( 4.8)
	초과급여	340( 1.4)	357( 5.1)	344( 1.3)	346( 1.4)	360( 4.4)	368( 6.3)
	특별급여	1,149(-12.5)	1,357(18.1)	2,340(16.7)	2,301(118.8)	3,122(33.4)	1,390(-39.6)
	비상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334(12.4)	2,506( 26.3)	2,539( 8.8)	2,51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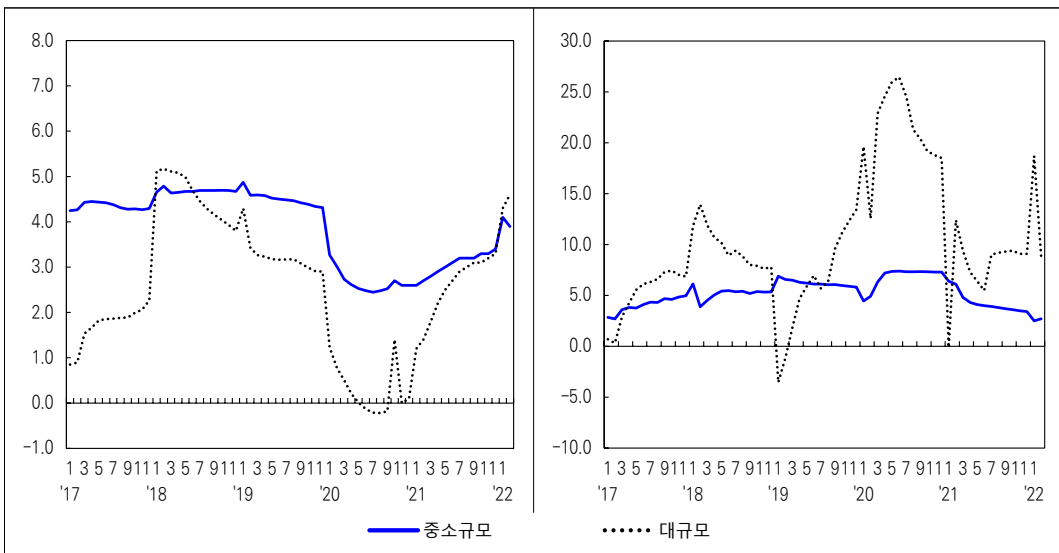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2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부동산업(1.6%)과 숙박 및 음식점업(0.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

- 2022년 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47만 2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47만 5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12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2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0만 8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9만 2천 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74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2월 평균임금상승률은 -6.5%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11.3%), 교육서비스업(-1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3%), 제조업(-9.1%) 등에서 임금하락폭이 컸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3,527	3,689 ( 4.6)	3,914 ( 4.4)	3,950 (16.1)	4,208 ( 7.5)	3,695 ( -6.5)
광업	4,325	4,415 ( 2.1)	4,438 ( 2.6)	4,288 ( 8.5)	4,650 ( 4.8)	4,124 ( -3.8)
제조업	3,990	4,239 ( 6.2)	4,729 ( 6.9)	4,606 (22.9)	5,292 (11.9)	4,185 ( -9.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 0.3)	5,892 ( 1.4)	6,102 ( 7.0)	5,971 ( 1.3)	5,475 (-10.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 5.3)	4,038 ( 5.5)	4,118 (17.1)	4,140 ( 2.5)	3,858 ( -6.3)
건설업	3,032	3,106 ( 2.4)	3,150 ( 0.3)	3,149 ( 6.6)	3,278 ( 4.1)	3,012 ( -4.3)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 3.7)	3,703 ( 2.7)	3,796 (14.8)	3,873 ( 4.6)	3,569 ( -6.0)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 7.5)	3,876 ( 5.7)	3,891 (13.6)	4,049 ( 4.5)	3,734 ( -4.0)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 1.4)	1,910 (-2.0)	1,907 ( 1.8)	1,979 ( 3.6)	1,908 ( 0.1)
정보통신업	4,613	4,796 ( 4.0)	5,194 ( 4.0)	5,418 (12.0)	5,643 ( 8.6)	4,920 ( -9.2)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 6.7)	8,065 (10.4)	8,424 (28.8)	8,965 (11.2)	7,472 (-11.3)
부동산업	2,848	2,954 ( 3.7)	3,025 ( 4.0)	3,144 (15.2)	3,252 ( 7.5)	3,193 ( 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 4.8)	5,203 ( 1.3)	5,394 (14.3)	5,671 ( 9.0)	5,129 ( -4.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 3.4)	2,521 ( 2.9)	2,554 ( 8.4)	2,636 ( 4.6)	2,492 ( -2.4)
교육서비스업	3,366	3,355 (-0.3)	3,658 (-1.0)	3,747 (14.3)	3,720 ( 1.7)	3,328 (-1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 2.5)	3,058 ( 1.3)	3,114 ( 9.3)	3,185 ( 4.2)	3,028 ( -2.8)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 4.2)	3,076 ( 3.2)	3,163 (13.5)	3,241 ( 5.4)	3,058 ( -3.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 5.4)	2,753 ( 6.0)	2,793 (14.8)	2,927 ( 6.3)	2,741 ( -1.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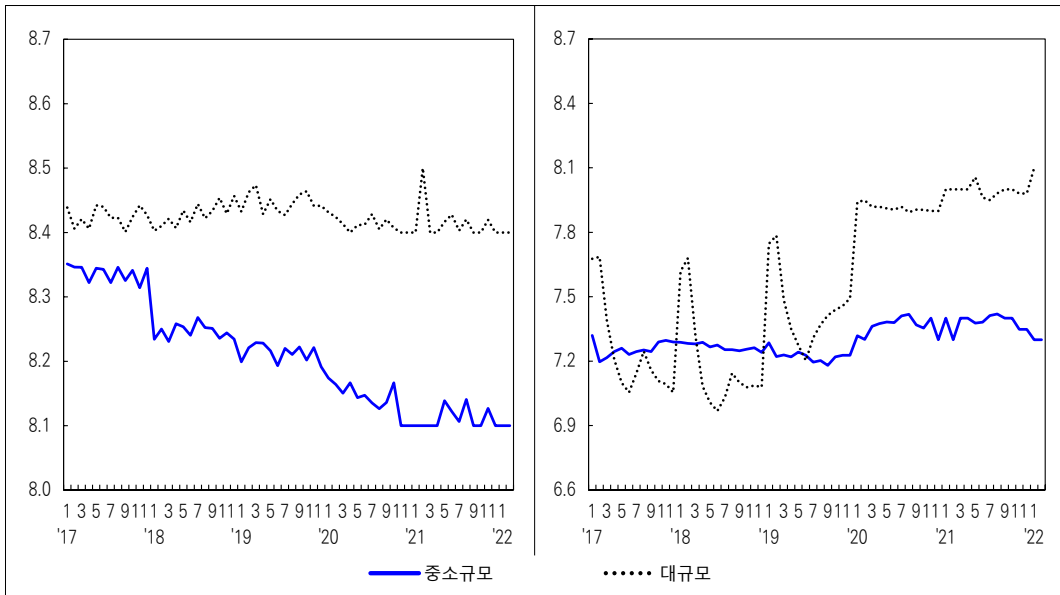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과 동일)

- 2022년 2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는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2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 증가함.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41.1시간, 142.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감소는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 기인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시간/일)



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 0.1)	149.4(-4.8)	142.1(-9.2)	148.7(-0.5)	141.1(-0.7)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 0.1)	155.6(-5.2)	148.0(-9.8)	155.1(-0.3)	147.2(-0.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 0.2)	148.2(-5.3)	140.8(-9.9)	147.7(-0.3)	139.8(-0.7)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4(-3.9)	7.2(-6.5)	7.3(-1.4)	7.4( 2.8)
	비상용 근로시간	96.1( 0.7)	97.4( 1.4)	93.2( 1.3)	87.7( 0.6)	93.7( 0.5)	88.4( 0.8)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53.3(-4.1)	146.3(-8.8)	150.7(-1.7)	142.5(-2.6)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54.0(-4.3)	147.0(-9.0)	151.6(-1.6)	143.3(-2.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43.0(-4.5)	136.1(-9.5)	140.8(-1.5)	132.2(-2.9)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 1.8)	10.9(-2.7)	10.9(-1.8)	10.8(-0.9)	11.1( 1.8)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 2.2)	127.3( 2.7)	121.1(-2.5)	123.4(-3.1)	118.6(-2.1)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2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

- 2022년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 교육서비스업(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3%), 숙박 및 음식점업(0.2%)임.
-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56.9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업(154.4시간), 부동산업(152.3시간), 제조업(151.8시간) 순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18.9시간)이었으며, 교육서비스업(121.4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30.6시간) 순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160.6	160.7( 0.1)	150.0(-4.7)	142.8( -9.1)	149.0(-0.7)	141.4(-1.0)
광업	181.2	179.9(-0.7)	168.4(-2.8)	157.1(-11.1)	162.7(-3.4)	154.4(-1.7)
제조업	172.7	173.5( 0.5)	162.4(-4.0)	154.0( -9.3)	160.4(-1.2)	151.8(-1.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57.1(-2.3)	149.2( -6.6)	155.7(-0.9)	145.4(-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 0.2)	166.5(-2.3)	158.0( -7.9)	164.9(-1.0)	156.9(-0.7)
건설업	136.9	135.9(-0.7)	128.4(-4.4)	121.3( -8.1)	127.0(-1.1)	118.9(-2.0)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 0.0)	153.2(-4.3)	146.0( -8.7)	152.5(-0.5)	145.1(-0.6)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 0.8)	149.8(-5.7)	143.9( -9.0)	151.0( 0.8)	143.7(-0.1)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37.2(-8.9)	130.3(-12.3)	137.3( 0.1)	130.6( 0.2)
정보통신업	163.8	164.1( 0.2)	152.6(-4.5)	145.2( -9.4)	151.9(-0.5)	143.8(-1.0)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51.3(-4.3)	144.2( -9.0)	148.7(-1.7)	140.9(-2.3)
부동산업	173.2	171.8(-0.8)	162.1(-3.8)	154.7( -7.6)	159.3(-1.7)	152.3(-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50.7(-4.4)	143.3( -9.8)	149.5(-0.8)	140.8(-1.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 0.2)	151.6(-4.7)	144.8( -8.6)	151.2(-0.3)	143.7(-0.8)
교육서비스업	136.6	137.2( 0.4)	125.3(-4.0)	120.5( -7.7)	126.7( 1.1)	121.4( 0.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46.8(-5.4)	140.0( -9.3)	145.8(-0.7)	139.2(-0.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 2.0)	134.5(-9.3)	131.8( -9.7)	140.4( 4.4)	133.8( 1.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 1.3)	151.5(-2.1)	143.4( -7.6)	151.7( 0.1)	143.9( 0.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6건
  - －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3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22년 4월 조정성립률 0.0%
  - － 4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와 같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4	6	5	0	0	0	4	1	3	0	1	4	0.0%
2021. 4	3	3	0	0	0	3	0	3	0	0	3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중재사건

- 2022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4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2건임.

〈표 2〉 2021년, 2022년 4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4.	1	2	2	0	0	4
2021. 4.	0	0	0	0	0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49건
  - 4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99건)보다 50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7.7%(3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2.3%(102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4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4.	149	141	33	6	75	11	7	9	451
2021. 4.	199	212	51	5	93	24	28	11	50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4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8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3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4	6	3	0	0	2	1	0	0	11
2021. 4	8	2	0	1	1	0	0	0	1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sup>2)</sup>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206건
  -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19건)보다 13건 많은 수치임.
  - 3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125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3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2. 3	219	125	33	25	24	43
2021. 3	206	126	29	37	19	4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4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끝에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노조는 2013년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해 창구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개별 노조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2021년에서야 합의에 이르렀음. 2021년 4월 28일 교섭위원 명단과 단일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이 진행됐음.
- 이번 단협에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법률적 손해 배상책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도 합의됐음.
- 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자가 개인적 용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음.
- 학교 행정실 면적으로 교실 1개 정도인 66㎡를 확보하고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음.

### ◆ 배달 대행업체·노동자, ‘배달료 하한선·수수료 상한선’ 합의

- 4월 20일 경남 창원지역의 배달 대행업체인 타자하나와 부릉은 라이더유니온과 임금협약식을 가졌음.
- 이번 임금협약의 핵심 내용은 음식점이 배달 대행업체에 내는 기본 배달료를 1건당 3,500원 이상으로 하고, 여기서 대행업체가 떼는 수수료율은 11%(액수로는 600원)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음.
- 지역 배달의 경우 대행업체들이 음식점 유치 경쟁을 하면서 배달료가 형성되는데, 명확한



-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형업체가 임의로 배달료를 내리거나 수수료율을 올리면 배달노동자가 받는 돈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음.
- 대형업체 조정에 따라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 적용도 되지 않았음.
  - 이번 임금협약은 안전배달료를 규정하는 법도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자체적으로 배달노동자가 받는 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을 노사 합의로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 서울시 버스 노사, 2022년 임금 5% 인상 합의

- 4월 25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위에서 제시한 임금 인상 조정안에 서명했음.
-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운전직의 임금 현행 호봉별 시급 5% 인상 ▲근로시간면제자(지부위원장, 상근자)의 임금 현행 월 임금 총액에서 5% 인상 ▲정비직의 임금 현행 월 임금총액(개근수당 제외)에서 5% 인상 등임.
- 2022년 임금교섭에서 서울시 버스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음. 사업조합의 요구안은 임금동결을 비롯한 △입원·골절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 20일 폐지 △무사고 수당 지급 단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등이었음.
-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올해 32만 2,276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했음. 운전직 4호봉 기준 시급을 8.09% 인상한 수준임. 아울러 ▲식사 질 개선 ▲고용안정 협약 체결 ▲장기 근속연수에 부합하는 호봉제도 개선 ▲견습·실습기간 근속연수에 산입 ▲무사고 포상금제 개선 등을 함께 제시했었음.

#### ◆ 웹젠 노조,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 결정

- 4월 9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웹젠위드)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92.78%의 투표율과 전체 대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음.
- 2021년 12월 21일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노조 측은 최초 1,000만 원 일괄 인상을 제시했음. 이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서 최소 인상 보장금액을 정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추가 인상 폭을 정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음.
- 하지만 사측은 평균 10% 인상을 고수했음. 이후 중간평가(B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지만 끝내 노조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음.

#### ◆ 대법 “하청 노동자 감전사, 원청인 한전에도 책임”

- 4월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음.
-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2017년 11월 충북 청주시의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조립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했음.
- 사고 당시 A씨는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음.
- 검찰은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하청업체 간부 C씨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원청인 한전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음.
- 1심은 한전이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음.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이고 상당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도급업체를 핑계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방기했다”며 “특히 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내버려 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현대산업개발이 6명으로 최다

- 4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다.
-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 14명이 사망했음.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숨졌음. 현대건설(주) 2개 현장에서 각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주) 판교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 이 밖에 디엘이앤씨 · 한화건설 · 계룡건설산업 ·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이 목숨을 잃었음.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 다올이앤씨 · 현대엘리베이터 · 화광엘리베이터 · 광혁건설 · 윈앤티에스 · 새만금준설 · 에프엠이앤씨 등 8개사임.

-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는 44명이었음.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울주군청·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기관으로 각각 1명씩 사망했음.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민간공사 인허가 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2명)로 화성시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이어 광주(6명)·부산(5명)·인천(4명)·서울(3명) 순이었음.
-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사 15개사를 대상으로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4분기 이상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임.

#### ◆ 완성차 노동자 10명 중 8명 “내연차 판매 금지 공감”

- 4월 14일 그린피스와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결과를 공개했음.
- 완성차 업체 노동자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봤음.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035년 이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은 82%가 공감했음. 2030년 또는 그 이전 판매금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64%에 달했음.
- 완성차 노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음. 노동자 94%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89%는 기후위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가 건강(32%), 재산(25%), 고용불안(16%) 순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음.
-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불신은 기업에 대한 불신보다 더 컸음.
- 정부가 미래차 산업 전환에 잘 대응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부정 답변(33%)이 긍정 답변(25%)을 앞섰음. 각 회사의 미래차 전환 정책에 대한 긍정 답변이 40%, 부정 답변이 23%였던 것과 비교됨.
- 전환에 필요한 우선 순위로는 정부의 미래차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33%),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25%), 기업의 미래차 전환 경영 전략 및 계획(17.9%) 순이었음.
- 설문조사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했음.

### ◆ 재택근무 경기도 노동자 열에 아홉이 “만족”

- 4월 14일 경기연구원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중인 재택근무’ 보고서를 발간했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18.7%는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음. 재택근무 빈도는 월 1~2회(26.8%), 주 5회 이상(21.4%), 주 2회(16.1%), 주 1회·주 3회(12.5%), 주 4회(7.1%) 순이었음. 코로나19 종식 이후 희망하는 재택근무 빈도로는 주 3회(25%)를 가장 선호했음. 이어 주 1회(17.9%), 주 2회(16.1%), 주 5회 이상(14.3%), 주 4회(10.7%) 순이었음.
- 노동자들은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 “출퇴근 부담 경감”(83.7%)을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 “충분한 수면·휴식”(38.8%), “효율적 시간 활용으로 자기계발·취미활동 가능”(34.7%) 순이었음. ‘재택근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재택근무를 위한 기술적 환경이 좋지 못해서”, “직원 간 의사소통 곤란”, “업무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 저하”가 거론됐음.
- 기업 79.4%는 재택근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원 업무 만족도 증가”(80%)가 주된 이유였음. “부대비용 감소”(32%), “우수인력 유치”(14%), “숙련직원 이직 방지”(14%), “생산성 향상”(14%)도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부수적 편익으로 인식됐음. ‘재택근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생산성 하락”, “의사소통 곤란”, “성과관리와 평가의 어려움”, “기업정보 유출 우려”가 언급됐음.
- 설문조사는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00명과 전국 사업체 인사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음.

### ◆ 플랫폼노동자 25만 명, 고용보험 가입

- 4월 15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시행 100일 동안 2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음.
-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0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종사자는 총 24만 9,932명이고 사업장은 총 2만 6,390개소”라고 밝혔음.
-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대리운전 기사에 비해 더 많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음.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64.3%)이 가입했음,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35.7%)이 가입했음. 퀵서비스 중 음식배달 기사가 14만 9,923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 노무제공 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만 7,386명(59.0%)으로 나타났음. 1개월 이상 계약일 경우 일반, 1개월 미만 계약일 경우 단기로 구분했음.

-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는 서울지역 가입자가 10만 2,040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만 7,030명(18.9%), 인천 1만 8,531명(7.4%)으로 뒤를 이었고,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는 전체 가입자의 연령 평균은 43.4세이며, 40대가 7만 2,669명 가입해 전체의 29.1%를 차지했음. 그다음으로는 50대(6만 3,520명, 25.4%), 30대(5만 6,802명, 22.7%) 순이었음.
- 가입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23만 4,644명(93.9%)으로 대부분이고, 여성은 1만 5,288명(6.1%)이 가입했음.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음. 2022년 1월 1일부터는 킥서비스 기사(음식배달 포함),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의 플랫폼종사자까지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음.

#### ◆ 실직 4명 중 1명 “코로나 유행 탓”

- 4월 18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경험과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실직을 경험했다는 572명에게 코로나19 상황과의 관련성을 묻자 28.4%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13.5%,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14.9%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음. 이 중 여성이 31.2%로 남성(25.2%)보다 많았음.
-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0~10점으로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 문항에선 코로나19 전후 차이가 뚜렷했음.
- 코로나19 이전엔 5.28점, 코로나19 이후엔 3.39점이었음. 응답 비율을 보면 ‘만족하지 않음(0~4점)’은 코로나19 이전 23.1%에서 이후 63.3%로 증가했고, ‘만족함(6~10점)’은 이전 41.0%에서 이후 12.5%로 감소했음.
-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떤지’를 1~7점으로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 문항에선 ‘나쁘다(1~3점)’ 응답이 코로나19 이전 15.2%에서 이후 41.7%로 증가했고, ‘좋다(5~7점)’ 응답이 이전 40.5%에서 이후 23.9%로 감소했음. 평균 점수는 코로나19 이전 4.48점에서 이후 3.78점으로 떨어졌음.
- 특히 30.5%는 지난 1년간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1.6%는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적이 있고, 6.3%는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음.
- 연구진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수준 차이를 점수로 따졌을 때, 여성(0.61점), 고졸 이하(0.70점), 코로나19 관련 실직(0.63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음.
- 이 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월 11~20일 국내 만 18세 이상 체감실업자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음. 웹·모바일 조사로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임.

### ◆ ‘영세 사업장’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는 1,048건, 적발은 16건

- 4월 1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에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노동청에 신고 접수돼 처리된 사건은 1,04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6조 위반으로 신고·처리된 사건은 2017년 845건, 2018년 1,097건, 2019년 1,260건, 2020년 1,249건이었음.
-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처리 건수가 다른 규모 사업장보다 많았음. 지난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05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345건, 300인 이상 사업장은 34건이었음.
- 반면 2021년 노동당국이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16건에 불과했음. 2017년 239건, 2018년 336건, 2019년 181건이었지만 2020년 23건에 이어 줄어든 것임. 신고·처리 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른 규모 사업장보다 많지만, 감독·적발 건수는 다른 규모 사업장이 더 많았음. 2020년과 2021년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 건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76건, 98건이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1건, 92건이었음.

### ◆ 알바해 본 청소년 45% “노동인권 침해”

- 4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했음.
-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중·고교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2018년 조사(15.9%)보다 8.2%포인트 하락했음.
- 중학생은 2.8%가, 고등학생은 11.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히 직업계고(19.9%)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일반고(3.7%)보다 높았음.
-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비스직에 몰려 있었음.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단 배포’(28.2%),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노동환경과 대우가 열악한 일자리에 주로 진출한 탓에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4.6%나 됐음. 이들이 당한 노동인권 침해 항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31.2%)과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인 5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 4월 21일 취업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자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이들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균 2회가량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가장 많았음.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이 뒤따랐음.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 2개월(18.3%) 순이었음. “6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16.1%나 나왔음.
- 체불된 임금 형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식대·유류비 미지급”(9.6%) 순이었음.
- 응답자 87.2%는 “임금체불에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답했음. 임금체불 대응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음. 48.3%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고 답했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는 응답도 있었음.
- 올해 최저임금(9,160원)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 41.7%는 “너무 적다”고 답했음. “적당하다”는 응답은 51%였고, “과하다”는 답은 7.3%에 그쳤음. 29.8%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33%), “공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1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4명 ‘여전히 참는다’

- 4월 2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응답자 23.5%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음.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음. 이어 부당지시(11.4%), 따돌림·차별(8.9%), 업무 외 강요(7.5%), 폭행·폭언(7.3%)이 뒤를 이었음.
-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절반 이상(51.5%)이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답했음. “직장을 떠나고 싶다”(48.1%)는 답도 절반에 가까웠음. 이어서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 건강이 나빠졌다”(30.2%), “직장내 대응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

- 다”(26.4%),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24.9%) 순으로 나타났음.
- 괴롭힘을 당해도 10명 중 8명(76.2%) 가까이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음.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도 15.1%나 됐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도 20.6%였음.
  - 실제로 신고를 한 응답자에게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 회사의 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묻자, 10명 중 6명(61.3%)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25.8%나 되었음.

#### ◆ 근기법 개정 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60% 줄었다

- 4월 25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노동시간 실태분석 :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현황’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음.
- 주 52시간 상한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지난해 7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음.
- 연구원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4월)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 노동시간은 2017년 4월 42시간, 8월 38.1시간에서 지난해 4월 38.8시간, 8월 35.4시간으로 각각 3.2시간, 2.7시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음.
-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4월 100만 1천 명, 8월 115만 5천 명으로, 2017년 4월 244만 7천 명, 8월 229만 6천 명에 비해 각각 144만 6천 명(-59.1%), 114만 1천 명(-49.7%) 줄었음.
- 주 52시간 상한제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음.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4월 25만 명, 8월 34만 5천 명으로, 2017년 4월과 8월보다 각각 41만 1천 명, 39만 8천 명 감소했음.
- 2021년 8월 기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353만 3천 명으로 4년 전보다 249만 2천 명 증가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재택·원격근무제(114만 명)와 시차출퇴근제(105만 5천 명)를 활용한 노동자가 많았음.

#### ◆ 퇴직 앞둔 교육공무직 63%가 ‘숙련 살린 대체직 재취업’ 원해

- 4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2021년 11월 11~30일 정년 퇴직까지 3년이 남지 않은 조합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우려했음. '퇴직 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10명 중 6명(57.4%)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했음. 이어 '의욕 상실(무력감 등)'(21%), '건강 악화'(12.9%), '주위의 무관심 또는 외로움'(4%) 순으로 답했음.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하겠다 계획으로 이어졌음. '퇴직 후 노후 생활 계획'(중복 응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56.9%)은 '재취업 및 구직활동'이라고 했음. 4명 중 1명(26.7%)은 '아직 없거나 모르겠다'고 했음.
- 퇴직 후 계획 여부를 떠나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단 응답자는 10명 중 8.5명(85.7%)이었음. '일할 의향이 없다'는 5.5%, '모르겠다'는 8.8%였음.
- 계속 일을 한다면 대부분 '현재 근무 중인 직종의 대체직으로 재취업'(63%)하길 원했음.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한다면 '새로운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19%, '요양보호사와 지역돌봄서비스기관' 10% 순으로 답했음.
- 재취업 시 희망하는 한 달 임금은 '150~200만 원' 38.3%, '100~150만 원' 25.5%였음. 희망하는 하루 근무시간은 '5~7시간' 34.5%, '3~5시간' 24.2%였고, 퇴직 예정자를 위해서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중복 응답)로 10명 중 7명(71.1%)은 '재취업 알선 및 재취업 교육'이라고 답했음.
- 퇴직 예정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중복 응답) 또한 '재취업 알선 및 재취업 교육 확보'(67%)가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공로연수(휴가) 신설 또는 확대'(31.9%),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31%), '조합원 복지사업'(30.4%), '퇴직자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 마련'(12.6%) 등의 순으로 응답했음.
- 이번 조사에는 여성 813명(96.8%), 남성 26명(3.1%), 기타 1명(0.1%)이 응답했음.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 54%, 특수교육지도사 13.1%, 돌봄전담사 6.9%, 미화(청소) 4.6%, 사서와 교무 각각 2.9%,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2.7%를 차지했음. 지역별로는 경기 28.9%, 충북 12.7%, 서울 11.3%가 참여했음.

#### ◆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40% 넘었다

- 5월 5일 인사혁신처는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약 41.5%인 5,2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2년 11.3%(756명)에서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7년 62%에서 2021년 72.1%까

- 지 상승했음.
- 인사혁신처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승진경력 인정, 휴직자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라고 설명했다.
  - 또 2021년 1월에는 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기존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